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11. 15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12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노 재 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6. 12.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전광역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도심지내 건축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지·주차장·문화공간등을 법적규정이상 설치 또는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상업지역에서 녹지·주차장·문화공간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건폐율을 10분의7에서 10분의8로 상향조정함.

나. 도시계획구역내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안에서 녹지·주차장·문화공간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

률을 1천퍼센트 내지 1천300퍼센트에서 1천100퍼센트 내지 1천500퍼센트까지로 상향조정함.

3. 검토 의견

본 안건은 도심지내 건축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지·주차장·문화공간등을 법적 규정이상 설치 또는 조성토록 유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상업지역에서 녹지·주차장·문화공간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건폐율은

10분의7에서 10분의8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중심·일반·유통상업 지역안에서 녹지·주차장·문화공간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1천퍼센트 내지 1천300퍼센트에서 1천100퍼센트 내지 1천500퍼센트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검토결과, 행정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지·주차장·문화공간등을 확충, 공공복리를 증진하려함은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기타 시설물등이

당초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등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